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9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등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영등포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매년 9월 28일자로 정함” (안 제2조)

### 3. 관계법령

- 없 음

### 4.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5. 조례(안) : 별 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제 3 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 2. 6.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1996년 2월 6일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영등포 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민의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매년 9월 28일로 정함” (안 제2조)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조례의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구민의날), 제3조(운영및행사)로 구분 규정하였는데, 자치법규 제정형식과 규정된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2조 구민의 날을 몇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첫째, 구청에서 각동주민, 관내학교교사, 민원인, 구직원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부 1,500매, 회수 1,124매(75%)> 실시한바, 분석결과는

- 9월 28일(1946년 영등포구역소에서 “구”로 명칭변경일) -----447명(40%)
- 5월 1일(1988년 지방자치구 승격일) -----368명(33%)
- 9월 19일(1917년 영등포면의 행정단위 최초일) -----309명(27%)

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1988년 5월 1일이 지방자치구 승격일이기는 하나 전국이 동일하고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것은 '91. 4. 15일 지방의회 구성과 '95. 7. 1일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집행하기 시작한 이후 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1917년 9월 19일이 영등포면으로서 행정단위로 지정된 최초일이라고 하나 영등포가 당시에 전국 2,512개면중 지정면(23개면)으로 확정된 날이고 면 제도가 실시된 것은 총독부령 제37호에 의한 191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9월 28일은 미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 의 설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되면서 영등포구로 명칭이 변경된 날이고 또한 9월 28일은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후 쫓기다가 서울을 탈환한 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민의 날이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결시킬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화합과 단결을 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있는 날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果 : 원안의결